

소방시설관리사 법령개정에 따른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면제요건 변경사항 안내문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일부과목 면제요건의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1. 시행』

1 시험과목 변경

변경 전(2026년 시험까지 적용)

□ 제1차 시험

- ①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 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의 성질·상태,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②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③ 소방관련 법령((1)「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④ 위험물의 성질·상태 및 시설기준
- ⑤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 포함한다)

⇒

변경 후(2027년 시험부터 적용)

□ 제1차 시험

- ① 소방안전관리론(소방 및 화재의 기초이론으로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② 소방기계 점검실무(소방시설 기계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소방기계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 ③ 소방전기 점검실무(소방시설 전기·통신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및 소방전기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 ④ 다음의 소방 관계 법령((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3)「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5)「건축법」 및 그 하위법령(소방 분야로 한정한다), (6)「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 제2차 시험

- ①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 ②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제2차 시험

-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실무(소방시설등의 점검에 필요한 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시설등의 현장점검 시 점검절차, 성능확인, 이상판단 및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② 소방시설등 관리실무(소방시설등 점검 및 관리 관련 행정업무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점검보고서의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무 능력을 포함한다)

② 응시자격 요건 변경

○ 기존 10가지 유형에서 6가지 유형으로 통합

변경 전(2026년 시험까지 적용)

- ①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 사람
-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⑤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변경 후(2027년 시험부터 적용)

- ①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② 위험물기능장
- ③ 소방설비기사
-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⑥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⑦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⑧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⑨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응시자격 5호(소방안전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학과

소방안전 관련학과 (고시 제3조)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소방안전 관리학과 (고시 제4조)	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하다) 2. 소방시스템학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학과(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를 포함한다)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8. 소방기계·전기·설비과 9.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 2027년부터 적용되는 응시자격에 따른 질의 해석

번호	질 의	해 석
1	응시자격 요건이 변경 전까지는 충족하지만, 변경 후 불충족한 경우 기존 심사내역이 계속 유효한지?	2026년까지 응시자격이 유효하여 심사를 받았을지라도 2027년 변경 이후에 응시자격 요건이 불충족한 경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야 함 ※ 단, 2026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 심사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제2차 시험 회차가 2027년인 경우에는 해당 시험까지 응시자격이 유효함
2	응시자격 5호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제4조(소방안전관리학과) 전체에 해당되는 경우가 범위(위의 표 내용 참고)
3	응시자격 6호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에 따라, 소방설비산업기사 혹은 소방공무원 등인 경우만 경력인정이 되는 것인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사항 중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고, 소방공무원 등의 경우 관련 업무 3년 이상으로 해석하여 자격 취득없이 3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수정 '25. 3. 4.) ※ 법령 해석 명확화를 위한 소방청 유권해석 결과 반영('25. 3. 4.) ※ 추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해당 법령 명확화 예정)

③ 일부 과목면제 요건 변경

○ 면제과목 변경 및 2차 일부면제 삭제

변경 전(2026년 시험까지 적용)	변경 후(2027년 시험부터 적용)
□ 제1차 시험 ①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면제과목: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②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면제과목: 소방 관련 법령	□ 제1차 시험 ①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면제과목(3과목): 1) 소방안전관리론 2) 소방기계 점검실무 3) 소방전기 점검실무 ②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삭제 '24.12.31.)

□ 제2차 시험

- ①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

※ 면제과목: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②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면제과목: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면제과목(3과목):

1) 소방기계 점검실무

2) 소방전기 점검실무

3) 소방 관계 법령

-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 나.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면제과목(2과목):

1) 소방기계 점검실무

2) 소방전기 점검실무

※ 둘 이상이 면제요건이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하나의 호의 과목만 면제

- 일부 과목면제 3호의 가(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 | |
|--|
| <p>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p> <p>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p> <p>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p> <p>나) 소방시설 착공·감리·완공검사 관련 업무</p> <p>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p> <p>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p> <p>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p> <p>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관련 업무</p> <p>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p> <p>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법안단체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p> <p>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정부 위탁 업무</p> <p>나) 소방 관련 법령에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p> <p>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p> <p>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p> |
|--|

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7)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
9) 나목 및 다목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따르되,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 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참고

○ 2027년부터 적용되는 면제요건에 따른 질의 해석

번호	질 의	해 석
1	일부 과목면제 3호의 가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은 어떠한 경력인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제1조의 다항에 해당하는 모든 경력(위의 표 내용 참고)
2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자체점검 업무를 한 사람의 경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력 내용이 무엇인지?	소방시설관리업이 등록된 업체에서의 경력만 인정하며, 그 중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자체점검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람이어야 함 ※ 추후 서류제출 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제출 필수